

금지초등학교 학교규칙 제10차 개정(안)

(※ 학교 규칙 전문에서 개정되는 내용을 발췌한 일부분입니다.)

제4장 교과 및 교육과정.수업일수 및 운영.출결석.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

제1조(교과 및 교육과정 등)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.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.

제2조(수업일수 및 운영)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학교장은 초.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2호의 단서 조항에 의하여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.
-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 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.
-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.
- ④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.
- ⑤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⑥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,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15일 이내(가정학습 포함)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⑦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, 필요시 반일(4시간)도 운영이 가능하다.(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)

제3조(출결석)

-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.
- ②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,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.
- ③ 학생 출결석관리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.
 1. 지각 : 학교의 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
 2. 조퇴 : 학교의 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
 3. 결과 :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
- ④ 출석으로 처리하는 경우, 질병으로 인한 결석, 미인정 결석, 기타 결석 등 출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과 관련 지침에 따른다.
- ⑤ 체험학습은 개인 교환학습, 단체 교환학습, 교외체험학습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출석으로 처리하되 해당 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따른다.

1. 개인 교환학습 : 1개월(4주) 이내
 2. 단체 교환학습 : 2주일 이내
 3.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**15일** 이내로 한다. 관찰, 조사, 수집, 현장 견학, 답사,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**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**, 감염병 위기경보 '심각,경계'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'가정학습'을 포함할 수 있다. 단, 감염병 위기경보가 '관심,주의'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없다.
- ⑥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에 의한다.
- ※ 교외체험학습의 경우, 연 **15일**을 초과한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.